

# ( 관인생략 )

행정 0214-568 731-6229

1985. 10. 7.

## 수신 수신처 참조

## 제 4 헌령발령

서울특별시 기관간 업무협조 규정을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 발령하였으니 시행에 착오없도록 할것.

첨부 : 서울특별시 훈령 제636호 1부. 끝.

제	제상	정리제상	서무제장	사무국장	학장
				전경	

서 울 특 별 시

수신처 :	허관1, 서과1-79, 서구1-17, 서소1-10, 서사1-57
날짜(10월)	
시	서부 -17.
제 38325	
서부	
사	
장	1988년 7월 처리일자

서울특별시 기관간 업무협조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5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장 영보현 ⑨

⑨ 서울특별시 훈령 제 636 호

## 서울특별시 기관간 업무협조 규정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은 기관간 업무협조규정(대통령령 11,38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기관간 업무협조 규정시행 규칙(총리령 286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협조통제관 ) 본청 산하기관에 두는 협조통제관은 서울시 보고 통제규정에 규정된 "자체보고 통제관" 또는 "분임보고 통제관"이 이를 겸임한다.

제 3 조 ( 지정협조의 지침 ) 규정 제 7조 2항 및 동조 제 3항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에서 시, 구, 사업소(경찰국, 소방관서포함)에 협조요청하는 지정 협조의 목록은 별표와 같다.

제 4 조 ( 처리기간의 준용 등 ) ①별표의 지정협조목록에 명시된 처리기간은 동일업무를 협조요청하는 각급행정기관에 준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별표의 처리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체협조 통제관의 통제를 받아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업무 협조를 요청받는 기관에 긴급한 사유를 명시하여 주어야 한다.

제 5 조 (통제 번호) ① 협조요청 문서의 통제인 난에는 지정협조의 경우에는 별표지정번호를 기입한다.

② 비지정 협조문서의 통제인 난에는 협조를 요청하는 기관의 공문서 수신기호 다음에 이음표 (~)를 하고, 협조문서 처리부에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제 6 조 (지도감독) 자체협조 통제판은 산하행정기관간의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 조정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영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 지정협조의 목록

지정번호	업무협조명	처리기간	협조요청기관	협조기관
훈협나1-1	시험감시관 출석협조	15일	총무처	시(인사과) 구(총무과)
훈협나1-2	광업원 설정에 따른 공익협의	20	동력자원부	시(연료과)
훈협나1-3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요청	30	문화부	시(시설계획과) 구(도시정비과)
훈협나1-4	학교시설 사업 시행계획 신청	30	•	시(시설계획과) 구(도시정비과)
훈협나1-5	학교시설물 전축 협의 신청	20	•	시(전축지도과) 구(전축과)
훈협나1-6	외무 취학 예정자수 파악	40	•	시(행정과) 구(총무과)
훈협나1-7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금지행위의 정화요청	30	•	시(보건위생과) 구(위생과)
훈협나1-8	토지형질변경 협의신청	30	•	시(도시계획과) 구(도시정비과)
훈협나1-9	거소조회	7	국세청	시(행정과) 구(총무과)
훈협나1-10	병역외무 부과 통지서 송달 의뢰	7	병무청	구, 동 (민방위과)
훈협나1-11	도로鋪作 승인 요청	30	구	시(도로과)

지정번호	업무형조명	처리기간	협조요청기관	협조기관
훈협나1-12	국유재산 관리계획 번 경 중인요청	30	구	시(관재과)
훈협나1-13	국·공유재산 재산가격 감정의뢰	30	"	"
훈협나1-14	도로부지 용도폐지 신 의 의뢰	30	"	"
훈협나1-15	대형 양수기 설치의뢰	7	"	수도관리사업소
훈협나1-16	10층이상 고층건물에 소재한 위생업소 허가 시 동의	7	"	소방본부 소방서
훈협나1-17	병원 영선사업 설계감 독 준공검사 의뢰	7	시립야동 병원	강남구청(건축과)
훈협나1-18	도로 점용허가에 따른 교통장애 및 공안문제 협의	7	구	경찰서
훈협나1-19	보도 청단차량 출입시 설 허가	15	"	"
훈협나1-20	행방불명자 소재 조사 의뢰	30	병무청	"
훈협나1-21	운전면허 취득자 명단 통보 요청	15	"	"
훈협나1-22	병역기피자 고발 처리 확인 요청	14	"	"

지정번호	업무형조명	처리기간	협조요청기관	협조기관
훈협나 1-23	국공유지 교환재산 목록 변경 협의	15	국방부	시(관재과)
훈협나 1-24	무상대부 재산교환 협의	17	"	"
훈협나 1-25	국유재산 무상관리 환 풍 의 협의	20	"	"
훈협나 1-26	지목변경 및 통급설정	20	"	시(세정과) (도시계획과) 구(세무1과) (도시정비과)
훈협나 1-27	조립 및 시비용 비료화 보협의	7	"	시(공원과) (녹지과)
훈협나 1-28	군부대내의 문화재 보수 협의	20	"	시(문화담당관)
훈협나 1-29	외국인 토지권리 하가위 특 신청의전 조회	7	"	시(지적과)

"관인생략"

서 울 특 별 시

인사 0110 - 2490

731-6221

85. 10.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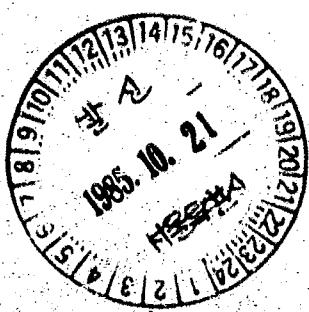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지방법정직공무원의 임용동에 관한 조례증 개정조례 준칙 시달 통보

1. 내부부 지기 0110 - 12494(85.10.18)호의 관련임.
2. 시보 1173(85.9.10)호로 시달한 지방법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대한 정확한 적용을 위하여 "동조례증 개정조례" 준칙을  
법률과 같이 시달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3. 서울특별시 지방법정직 인사관리 조례 부칙은 주후 개정할 것임.

첨부 지방법정직공무원의 임용동에 관한 조례증 개정조례 준칙 1부. 끝.

제	제 장	사무국장	학 장	결
	具	具	具	具



서울대학	결재	서 울 특 별 시	장
AS 10:22			
수신처 산하전기관.			
3956			
서우	서	202	
	사		
	항		
		1985년 10월 21일	

## 지방법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준칙

지방법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조 (근무상한연령 초과자에 대한 경과 조치)

- (1) 이 조례 시행당시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이 초과된자는 1985년 12월 31일에 근무상한 연령이 달만 것으로 본다.
- (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자의 경우에도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상한 연령을 연장 받고자 하는자는 1985년 11월 30일까지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 연령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구 조문 대비표

연 행	개 정 안
<p>부 칙</p> <p><u>제3조(근무상한연령 초과자에 대한 경과 조치)</u> 이 조례 시행당시 근무상한연령이 초과된 자에 대하여는 1985년 12월 31일까지는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부 칙</p> <p><u>제3조 (근무상한연령 초과자에 대한 경과 조치)</u>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이 초과된자는 1985년 12월 31일에 근무상한연령이 달한 것으로 본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고자 하는자는 1985년 11월 30일까지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p>

서 울 대 학

번호 02103 ~ 285

1985. 11. 1.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법령개정전의(안) 제출 간의

1. 법부 02103 ~ 477(05.10.19)로 광현입니다.

2. 상기 대로로 시행한 법령개정전의안 제출의 건은 05.11.01까지 제출한 전의안이 다음 조건만 충족되었을 때 주미 서유시 행정여건으로 보아 그간 관리 주민부 차에 개정전의 대상이나 적용하지 않았거나, 앞으로 행정부 향락여건을 한정하는 각종법령의 규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제출기한을 당초 05.10.21까지에서 05.11.3까지 연기하오니 각 신과장은 지침도하여 바침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된 것의안

- (1) 학교시설 사유축진법 시행령 부칙 2항 (인정행위) --- 시설기획과  
 (2) 학수도법 시행령 제21조 (언체급의 한도액) --- 학수과

나. 개정전의 대상법령, 제출시식, 사후조치계획등을 기시한 공문을 (번호 02103 ~ 477, 05.10.19)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제	시.체상	총리제장	서무제장	사무국장	학장	전
	류가	조			ZL	

1985. 11. 01

서울시립대학 행정부	부	무	당	관
1985. 11. 4.	부	무	당	관
주전자 40PF	부	무	당	관
서무	부	무	당	관
	사	행	205	205
	205	205	205	205

( 관인생략 )

二  
中華書局影印

卷四 22410-3425

720-3421

1985. 11. 4.

수신 수신서 살포

제목 국유재산법시행규칙중 개정령 송부 및 관련업무지시

- 제주부 국재 22410-2940 (85. 10. 31)의 이첩 일
  - 국유 재산법시행규칙중 개정령이 법률과 같이 공포 되었기에 그 사본을 솔부하여.
  - 동 개정령시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卷之三

가. 품계정령 제11조 제1항 제5호의 "소관물분령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관과 확인서"는 범례2)의 양식에 의하여.

나. 국유재산법시행령 제 36조 제 1호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는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는 국유재산관리 계획의 정안바에의함

서부 3.1. 국유재산법시행규칙증 제작방법

1. 국유재산법시행규칙증 제정통지문 1부			
2. 국유재산법시행규칙증 제정통지문 2부			
국 제 장	국 제 장	국 장	국 장
문 고 부 장 관			
정부공문서 규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아 총무과장 김 아 중 전			

수신처: 마7-13, 학7-45, 전7-20.

서울시립대학	결재
접수	1988. 11. 18
일시	11시
접수 인	447
주3	사무
작성자	1988년 11월 18일 자리장

(별첨 1)

제부부령 1658호

## 국유재산법시행규칙증개정령안

국유재산법시행규칙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7조 제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소재 국가의 관세법령에 따라 등기·등록 또는 이에 갈음하는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1조제 1항제 2호 및 제 3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항에 제 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소관청 불분명 여부를 조사한 공부열람결과 확인서

제 11조제 2항중 “제 1항제 1호 내지 제 3호”를 “제 1항제 1호”로 하고, 동항에 제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등기부등본 및 지적법제 2조제 1호의 지적공부

제 11조제 3항중 “제 1항제 1호 내지 제 3호”를 “제 1항제 1호”로 하고, 동항에 제 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등기부등본 및 지적법제 2조제 1호의 지적공부

제 12조제 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 2항중 제 4호·제 6호 및 제 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여, 동항에 제 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동일 평가 시점의 교환재산 평정 가격과 그 평정 조서
6. 교환재산의 등기부등본 및 보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7. 교환재산의 도면
8.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재산의 도시계획인원  
제 12조 제 3항 제 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 4호를 삭제  
하며, 동항 제 6호 내지 제 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양여 목적 또는 양여사유
6. 양여 조건
7. 도면
8. 신청서의 부본
9. 양수 목적인 사업의 계획서와 그 수지예산서  
제 12조 제 4항 중 “제 3항 각호”를 “제 3항 제 1호 내지 제  
3호 및 동항 제 5호 내지 제 8호”로 한다.  
제 19조 제 1항 중 “사용허가”를 “사용·수익허가”로, “전물평  
가액과 부지평가액”을 “전물가액과 부지가액”으로, “재산의 평가액”을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제 19조 제 2항 중 “사용허가”를 “사용·수익허가”로, “전물평  
가액”을 “전물가액”으로, “재산의 평가액”을 “재산의 가  
액”으로 하고, 동항 제 1호 및 제 2호 중 “부지평가액”을 각  
각 “부지가액”으로 한다.

제 19 조제 3 항 본문중 “사용허가” 를 “사용·수익허가”로,  
“건물평가액”을 “건물가액”으로, “재산의 평가액”을 “재  
산의 가액”으로 하고, 동항 제 1호 내지 제 5호중 “부지평  
가액”을 각각 “부지가액”으로 한다.

제 20 조제 3 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경작물의 소득금액을 정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그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청  
정한다.

제 24 조제 4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정부위탁업무·공무원후생업무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총괄청이 지  
정하는 법인

제 31 조제 1 항중 “한국은행”을 “국고”로 하고, 동조제 3 항  
중 “소송종료”를 “화정판결”로 하며, 동항에 제 4 호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판결문 사본

제 3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3 조 (특정지역) 영 제 37 조제 1 항단서에 규정하는 총괄청  
이 지정하는 지역은 인구 20 만이상인 시로 한다.

제 34 조 중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6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를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 1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한다.

제 34 조의 2에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 37 조 제 7 항의 “기타 정당한 사유”라 함은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매각을 예약한 경우를 말한다.

제 55 조의 2 중 “은닉 또는 무주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해당없음을 통보한다” 를 “은닉 또는 무주재산이 아닌 경우 또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이를 통지한다”로 한다.

제 57 조의 제목 “(은닉재산등 목록부)” 를 “(은닉재산등 처리대장)”으로 하고, 동조제 1 항을 삭제하여, 동조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도지사는 별지 제 14 호 서식(6)의 은닉무주재산처리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반기경과후 30일 이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8 조 제 1 항 본문 중 “500만 원” 을 “100만 원” 으로, “100분의 10” 을 “1000분의 10” 으로 하고, 동조제 2 항 본문 중 “300만 원” 을 “50만 원” 으로 “100분의 5” 를 “1000분의 5” 로 하며, 동

조제 3 항중 “신고당시”를 “제 1 항 및 제 2 항에 해당하는 재산일  
지라도 신고당시”로, “100만원”을 “10만원”으로, “100분의  
3”을 “1000분의 3”으로 하고, 통조에 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④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필지별”은 신고당시의 필지를 기준으  
로 하며 신고당시의 필지가 화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  
귀속 당시의 필지를 기준으로 한다.

|| 63 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63 조의 2(공유토지의 분할) 관리청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  
유재산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는 때  
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할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비율과 같도록 분할하여 이를 위한 평가는 제 32조제 2항  
에 규정한 범위에 의뢰한다.

|자 제 14호서식·별지 제 14호서식(4) 및 별지 제 14호서식(5)를 각  
 삭제하고, 별지 제 14호서식(6)의 제목 “( )분기 은닉무주재산  
 리현황보고”를 “( )반기 은닉무주재산처리현황보고”로 하며,  
 서식의 기별란중 “당분기증”을 “당반기증”으로 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공공단체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2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단체로 지정받은 법인은 제24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공공단체로 지정받은 것으로 한다.
- ③(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국가기속이 확정된 은닉재산등에 대한 보상금의 최고액과 그 보상을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별첨 2.)

공부열람결과확인서

상기한 재산은 동기부동본 및 지적법 제2조제1항의 지적공부를

열람한 결과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임을 확인함.

19 년 월 일

### 부리향사장선별기판

el

( 190 mm x 268 mm )